

대학원 학위수여규정

제 4 장 학위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

제11조(학위논문제출시기) 학위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의 제출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.

제12조(학위논문제출자격) 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석사과정의 보충과목 이수자는 인정학점외의 부족학점을 위 학점에 가산 취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>

② **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입학 후 해당 전공분야의 SCI, SCIE, SSCI, A&H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발표실적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학과(전공)에 따라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.**

<신설 2011.9.2>

제13조(학위논문 심사신청 구비서류 및 작성) 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석사과정

- 가. 학위논문 심사신청서 별지(서식4)
- 나. 학위논문 추천서 별지(서식5)
- 다. 논문요약서 별지(서식6)
- 라. 학위청구논문 3부
- 마. 기타 필요한 서류

2. 박사과정

- 가. 학위논문 심사 신청서 별지(서식4)
- 나. 학위논문 추천서 별지(서식5)
- 다. 논문 요약서 별지(서식6)
- 라. **연구실적서 별지(서식7) 및 연구실적 논문별쇄본 1부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 1부**
<개정 2011.9.2>
- 마. 이력서
- 바. 재학(수료)증명서
- 사. 학위청구논문 5부
- 아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14조 삭제

제15조(논문편수) 석사 및 박사학위청구논문은 1편으로 한다. 다만,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참고논문 또는 부분, 모형, 표본 및 기타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논문작성 언어) ① 학위논문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.

② 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1종의 외국어 초록을,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7조(논문체제 및 작성)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체제 및 작성요령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8조(심사여부 결정) 삭제

제19조(학위논문심사위원 위촉) ①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은 소속학과 전임교원 또는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별지(서식8)로 해당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②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은 소속학과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별지(서식8)로 해당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제20조(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) ① 석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,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되,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②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는 5인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을 외부인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, 부위원장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지도교수는 위원장,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제21조(학위논문심사위원장의 권한)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와 진행을 주재하되, 의결에 있어서는 타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.

제22조(논문심사위원의 교체 금지) 위촉된 심사위원은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체할 수 없다.

제23조(학위논문의 심사) ① 학위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2회로 하며, 예비심사는 심사위원의 개별적인 심사를, 본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로 한다.

② 석사학위논문심사는 2회로 하며, 제1차를 예비심사로, 제2차를 본심사로 한다.

③ 박사학위논문심사는 5회로 하며, 제1차는 예비심사로, 제2,3,4,5차를 본심사로 한다.

④ 예비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지정된 논문발표회에서 발표되어야 한다.

제24조(학위논문심사기간) 논문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당해 학기 최종심사일까

지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다음 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제25조(구술시험)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1회 이상 시행한다.

제26조(구술시험위원)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이를 겸한다.

제27조(구술시험평가 및 판정) ①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② 구술시험 통과에는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의 2/3이상, 박사과정은 4/5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.

제28조(논문판정) 논문심사의 통과에는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의 2/3이상, 박사과정은 4/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, “가” 또는 “부” 판정한다.

제29조(논문심사 결과보고)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0조(논문의 공표)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칙 <2011.9.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② **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**